

연구 노트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변필성*

요약: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시행해온 기업의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고찰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중소기업(특히 쇠퇴·정체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의 개인 및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중앙정부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중소기업, 대출지급보증, 세금공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1. 머리말

신규기업의 창업과 기존 기업의 성장은 지역에서 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므로, 기업의 육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추진되어 왔다. 지역정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도 쇠퇴·정체 지역 기업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쇠퇴·정체 지역을 비롯한 영국 전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정·금융 지원은 영국이 가입하고 있는 EU의 보조금 규정(Regional Aid Guideline)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중앙정부부처인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과거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이하 DBERR이라 칭함)이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영국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성장시키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정·금융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지급보증(Small Firm Loan Guarantee), 중소기업(특히, 쇠퇴·정체 지역 또는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의 개인 및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중앙정부의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venture capital fund) 설립 및 운용 등을 고찰한다. 또한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Small Firms Loan Guarantee

Small Firms Loan Guarantee(이하 SFLG라 칭함)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DBERR)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즉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 경향을 SFLG를 통해 완화시키고자 한다. SFLG는 1981년에 도입되었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7).

중요한 것은 SFLG는 DBERR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DBERR은 SFLG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예: 신규 참여 금융기관의 인증, 기존 참여 금융기관의 실적 모니터링, 중소기업 및 기업지원기관의 의견 수렴 등), 무엇보다도 참여 금융기관별로 SFLG가 적용될 수 있는 연간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7).¹⁾

그리고 SFLG 참여 금융기관(2008년 3월말 현재 32개 금융기관 참여)은 설정된 연간 SFLG 대출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 기업 선정 및 대출 관련 모든 결정을 담당한다.

SFLG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급불능 시 대출 잔액의 75%와 6개월 기간의 이자를 DBERR이 지급을 보증하되, 대출금액이 5000~25만 파운드이고 기간이 2~10년인 대출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7).

그리고 SFLG의 수혜대상 기업은 매년 대출 잔액의 2%를 보증비용으로서 DBERR에 지불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560만 파운드 이하이며 창업한지 5년 이하인 기업이 SFLG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즉 SFLG는 창업 및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데, 5년 이하 여부는 해당 기업이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SFLG가 기업 인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 모두가 창업한 지 5년 이하이어야 한다.²⁾

운수, 농업, 석탄·철강 업종의 기업은 SFLG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출금융과 기존 대출의 대체도 SFLG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7). 이러한 제한 기준은 EU의 보조금 규정 준수 의무에서 비롯되었다.

2007-2008 회계연도 기간 중에 총 2542개의 중소기업(총 보증금액: 약 2049억 5900 만 파운드)이 SFLG의 수혜를 받았으며, 1981년 6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총 10만 8218개 업체(총 보증금액: 5조 193억 3600만 파운드)가 SFLG의 수혜를 받았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et al.* 2008).

3.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이하 CITR이라 칭함)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이하 CDFI라 칭함)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tax relief)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쇠퇴·정체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 장려를 목적으로 추구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CDFI는 CITR를 통해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개인 및 법인이 CDFI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CDFI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금유치가 이루어진다(<http://www.hmrc.gov.uk/manuals/citmanual/CITM9900.htm>). 그러나 CDFI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매입된 지 5년 이내로 환매될 수 없고, 대여된 자금은 5년 이내로 환매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전환될 수 없다. CDFI가 은행일 경우, 개인 및 법인이 해당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금 예치는

CDFI에의 개인 및 법인에 의한 자금 대여로서 간주된다. CDFI는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해준 개인 및 법인에게 세금공제 인증서(tax relief certificate)를 발급한다.

CDFI는 유치된 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쇠퇴·정체 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또는 사회기업(social enterprise) 등에 투자하며, 다른 CDFI에도 투자할 수 있다. 쇠퇴·정체 지역은 영국 중앙정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공표하는 삶의 질 지표(예: 잉글랜드의 경우,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등을 활용해서 선정된다. 사회적 약자 그룹은 인종·민족(ethnicity), 성(gender), 연령, 종교, 장애여부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포괄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종업원 25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넘지 않거나 자산 규모가 4300만 유로를 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의한 소유지분이 25% 이하인 기업을 지칭한다(<http://www.berr.gov.uk/files/file43003.doc>).

CDFI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은 투자액의 5%에 달하는 세금(소득세 및 법인세)을 5년 동안 매년 공제받는다. 즉 CITR을 제공받는다. CDFI인 기업, CDFI를 통제하는 투자자 개인 및 그룹, CDFI의 구성원인 투자자에 의한 자금투자, 조세회피 목적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CITR이 제공되지 않는다(<http://www.hmrc.gov.uk/manuals/citmanual/CITM9900.htm>). CDFI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가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CDFI에 투자 및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지 5년 이내에, 해당 개인 및 법인이 자금을 상환 받거나³⁾ 자신들의 투자가 처분될 경우, CITR은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CDFI가 자금을 유치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인증을 상실할 경우, 5년의 기간 중 상실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CITR이 제공되지 않는다.

DBERR의 Enterprise Directorate(과거 Small

Business Service; 이하 ED라 칭함)⁴⁾가 CDFI의 인증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HM Revenues and Customs이 CITR 관련 세금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CDFI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해왔다. 특히, 2001년~2004년에 60개의 CDFI가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4300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 받았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t al.* 2006). 한편, 2006년 4월부터 RDA가 해당 지역내 CDFI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t al.* 2007).

4.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영국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이하 RVCF라 칭함)는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RDA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치 않은 중소기업에게 벤처캐피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영국 중앙정부의 RVCF에의 출자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1년에 승인한 후, 영국 잉글랜드 9개 Region별로 2002년~2003년에 RVCF가 설립되어 운용되기 시작하였다(Mason & Harrison 2003). 9개 RVCF 각각은 해당 지역 내에서 2015년까지 운용될 예정이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t al.* 2007). 무엇보다도 RVCF는 중앙정부, 펀드매니저, RDA 간의 역할분담을 토대로 설립과 운

용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Region에 초점을 맞춰 투자가 수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창업 및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과 확장 투자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기존 및 외부 경영진에게 기업의 소유를 양도(Management Buy-Out, Management Buy-In)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기업도 RVCF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RVCF의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우선주(예: 전환·상환 우선주, loan stock 또는 preferred shares 등) 인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RVCF는 첫 회에 25만 파운드까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기업이 RVCF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자금을 제공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25만 파운드에서 공제한 금액까지 RVCF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RVCF가 자금을 기업에 투자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면, 추가로 최대 25만 파운드를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25만 파운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이 각 지역의 RVCF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RVCF의 관할 Region에 본사가 있거나 핵심기능이 입지해 있는 기업,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높거나 해당 지역에 이득이 될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 (2)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4000만 유로 미만이거나 자산 총액이 2700만 유로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요건
- (3) 기업의 지분 중 25% 이상이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기업 또는 상기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공동 소유주가 되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 (4) 부동산, 금융 서비스, 회계·법률 서비스, 호텔, 농업, 임업, 원예, 요양시설(nursing and residential care homes), 국제 운송(international motor transport) 등 분야의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RVCF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분 출자를 받지만,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처럼 기본적으로 펀드매니저가 투자수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VCF를 전담 운용한다(Almeida Capital 2005). 즉 영국 중앙정부는 RVCF의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Heger *et al.* 2005). 지역별 RVCF의 펀드매니저는 공개 입찰 및 영국 중앙정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Small Business Service와 관련 전문가 그룹)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00년에 선정되었다.

RVCF는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의 출자, 그리고 RDA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하는 지역화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영국 중앙정부가 RVCF와 같이 개별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출자한 것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기간 중에 창업 및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 소유권 양도(예: Management Buy-In)에 대한 투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전자 유형의 투자가 런던을 비롯한 South East와 East of England 등 성장지역에 집중되었다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Harrison & Mason 2000; Mason & Harrison 2003).

RVCF 재원의 약 50%는 영국 중앙정부 출자와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 이하 EIF라 칭함)의 출자에 의해 조달되며, 나머지 재원은 펀드매니저가 민간투자자로부터 유치한다. 단, 영국 중앙정부와 EIF 투자가 RVCF 결성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Mason & Harrison 2003). 그리고 RVCF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앙정부는 자체 투자로부터 얻을 수익에 상한선을 부과하고, 또한 RVCF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일순위로 손실을 보는 것에 동의했다(Mason & Harrison 2003).

DBERR의 ED가 RVCF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며, 특히 지역별 RVCF에 대한 중앙정부(즉 DEBERR)와 EIF의 투자를 관리한다. 펀드매니저는 RVCF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자금 신청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RDA는 RVCF의 설립과 운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RDA는 지역 내 구축된 자체 기

표 1. RVCF의 현황

RVCF 명칭	관할 Region	펀드 규모
North West Equity Fund	North West	3550만 파운드
North East RVCF	North East	1500만 파운드
Yorkshire and the Humber RVCF	Yorkshire and the Humber	2500만 파운드
West Midlands RVCF	West Midlands	2000만 파운드
East Midlands RVCF	East Midlands	3000만 파운드
South West RVCF	South West	2500만 파운드
South East Growth Fund	South East	3000만 파운드
East of England RVCF	East of England	2000만 파운드
London RVCF	Greater London	5000만 파운드

출처: <http://www.thecapitalfund.co.uk/> <http://www.berr.gov.uk/bbf/small-business/info-business-owners/access-to-finance/regional-venture-capital-funds/page37596.html>

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RVCF 설립을 위한 펀드 매니저의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설립 이후에는 RVCF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VCF를 기업지원 조직에 연계시키며, RVCF 자문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역별 RVCF의 규모는 <표 1>과 같다.

2) Enterprise Capital Fund

Enterprise Capital Fund(이하 ECF라 칭함)는 영국 중앙정부의 자금 투자에 기반을 둔 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자금(risk capital)을 용이하게 확보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ECF를 통해 신규 투자 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원활히 유입될 수 있게 한다. ECF는, 중앙정부의 자금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조합이다.

ECF 지위를 얻고자 하는 조직의 투자조합 운용계획(운용인력, 투자전략, 자금조달방안, 투자수익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에 대한 중앙정부(DBERR)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ECF가 선정된다(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6).⁵⁾ 2006

년-2007년에 총 8개 펀드가 ECF로 선정되었고 2008년 현재 ECF 선정을 위한 제3차 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다(<http://www.berr.gov.uk/files/file44499.pdf>).

선정된 ECF에 중앙정부가 자금을 투자하고, 중앙정부 투자를 토대로 ECF가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ECF에 대한 출자금 총액의 2/3까지 중앙정부가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ECF로부터의 수익 배분시 중앙정부는 4.5% 정도의 고정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2008년 3월말까지 중앙정부(DBERR)가 ECF에 투자한 총 금액은 1750만 파운드에 달한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et al.* 2008). ECF는 2018년까지 운용될 예정지만(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t al.* 2007), 중앙정부와 ECF의 투자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운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ECF의 소유 지분은 거래될 수 없다.

ECF는 첫 회(initial investment) 최대 200만 파운드를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에 ECF 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유입이 있는 경우, 유입된 자금과 합쳐 최대 200만 파운드 한도 내에서 ECF가 투자할 수 있다. ECF가 자금을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follow-on investment)가

허용되는데,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첫 투자(first investment)가 이루어진지 6개월 이내의 추가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첫 투자 시점부터 이루어져온 총 투자 금액(ECF 이외의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도 포함, 단 대출만을 제공한 투자자는 제외)이 200만 파운드 이하이면, 허용된다.
- (2)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첫 투자가 이루어진지 6개월 이후의 추가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ECF의 총 투자가 20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기업에서의 ECF 보유 지분비중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ECF의 총 투자가 ECF 기금규모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ECF의 투자 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넘지 않거나 연간 자산규모가 430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기업(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EU의 중소기업 기준에 의거)
- (2) ECF의 투자 대상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소유 관계에 있어 독립적(autonomous)이어야 한다. → ① 다른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지 않는 기업, ② 지분의 25% 이상이 다른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되지 않는 기업, ③ 통합 대차대조표(consolidated account)를 작성하지 않고, 통합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업
- (3) 영국 경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영국 경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4) 발행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이 공식적인 거래소(recognised exchange)에 상장되지 않거나 장외시장(non-recognised exchange)에서 해당 주식 및 유가증권의 시세가 매겨지는 기업

또한 합성섬유, 자동차, 조선, 철강, 석탄, 운수, 농업, 어업 부문의 기업에는 ECF가 투자를 수행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업이 주축이 되는 기업도 ECF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거래, 도소매업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의 거래, ② 금융, 부동산개발, 법률 및 회계 서비스, ③ 임대업(leasing), ④ 로열티 또는 라이선싱 요금의 수급(기업의 자체 특허로 인해 로열티 및 라이선싱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⑤ 농경, 환금작물 재배, 임업, ⑥ 숙박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 ⑦ 이상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3) Early Growth Fund

Early Growth Fund(이하 EGF라 칭함)는 잉글랜드 내 창업 및 성장 기업에 대한 소규모 벤처캐피탈(평균 5만 파운드) 공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t al.* 2007). 일부 EGF의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분을 중앙정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조달받는다.

EGF는 기업에게 최대 1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즉 매칭펀드). 즉 해당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가 EGF에 의한 투자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창업 또는 분리 신설 기업(university spin outs), 혁신 및 지식 기반 기업, 신규 사업기회를 위해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EGF의 투자 대상이 된다. 그리고 EGF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문은 없다.

EGF도 RVCF처럼 펀드매니저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 결정을 수행한다. 일부 EGF는 RVCF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운용되지만,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EGF도 있다.

4) UK High Technology Fund

UK High Technology Fund(이하 UKHTF라 칭함)

는 투자모태조합(즉 fund of funds)으로서 초기단계의 기술기반(technology-based)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유형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자금을 투자한다. 영국 중앙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UKHTF에 투입하였고 민간부분이 약 1억 600만 파운드를 출자하였다. UKHTF는 2007년 6월말까지 9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1억 2400만 파운드를 출자하였고, 해당 9개 투자조합은 243개 기업에 벤처캐피탈을 제공해왔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et al.* 2008).

UKHTF는 투자수의 배분 시 민간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할당되는 투자 수익률을 제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UKHTF에 투입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유치를 장려한다(ec.europa.eu/community_law/state_aids/comp-1999/n705-99.pdf). 1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모태투자조합이지만, 펀드 지분 소유자 다수의 동의를 거쳐 15년까지 연장 운용될 수 있다(ec.europa.eu/community_law/state_aids/comp-1999/n705-99.pdf).

5. 맺음말

본고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영국 중앙정부의 재정·금융 지원 중 DBERR이 시행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SFLG, CITR, 그리고 중앙정부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결성·운용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FLG는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한 신용보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

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별도로 보증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영국의 SFLG는 기업의 대출 신청에 대응해서 참여 금융기관이 DBERR에 의해 설정된 연간 SFLG 대출 한도 내에서 자체 평가를 거쳐 대출금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과 대출 관련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투자 활성화 지원책으로서 중앙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참여를 토대로 SFLG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CITR은 위험부담 때문에 민간부분이 투자를 기피하는 쇠퇴·정체 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기업에 중앙정부에 의한 조세부담 완화라는 유인책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자금을 유입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및 그룹에서의 고용기회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CITR은 중앙정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되 CDFI를 통해 지역화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쇠퇴·정체 지역을 사회적 약자로서 간주하고, 해당 지역내 사회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수단으로서 CITR과 CDFI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이윤추구 논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중앙정부 목표에 기여하는 효과를 RVCF, ECF, EGF 등 영국 중앙정부 출자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RVCF, ECF, EGF 등은 투자자금 조달이 대체로 용이치 않은 중소기업(창업자 포함)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한다(Almeida Capital 2005). 동시에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처럼 투자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RVCF, ECF, EGF 등이 투자 대상으로서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실제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분출자(equity investment)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및 스킬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한다(Harrison & Mason 2000; Mason & Harrison 2003). 또한 RVCF, ECF, EGF 등의 경우, 중앙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투자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EU 및 WTO의 보조금 제한 규정과 부합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가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다. 특히「국민연금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국민연금 및 기금이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지분을 출자할 수 있거나 출자해오고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결성된 한국모태펀드도 중소기업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의 출자에 기반을 두고 개별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영국의 RVCF와 같은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광역 공간단위별로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중앙정부 출자에 기반을 둔 지방 중소기업 전문 투자조합은 200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벤처캐피탈회사 그리고 기관투자자(특히 지역 금융기관)와 함께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예: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내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자금조달능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일부 시·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추진되어온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하부구조 확충과도 지역내 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영국 중앙정부가 출자하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로 인해 민간 투자조합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Almeida Capital 2005)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 한도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 지역별 특수한 조건 특히 벤처캐피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해서,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⁷⁾

주

- 1) 2008년 4월 DBERR은 SFLG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인 Capital for Enterprise Limited(이하 CfEL이라 칭함)에게 위임시켰다(<http://www.berr.gov.uk/files/file47204.pdf>). 또한 CfEL은 Enterprise Capital Fund,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Early Growth Fund, UK High Technology Fund 등의 프로그램도 관리한다.
- 2) 더 많은 중소기업이 SFLG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DBERR은 2008년 3월에 '5년 이하'라는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et al.* 2008; <http://www.berr.gov.uk/files/file47204.pdf>). 한편,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국 중앙정부는 기존에 제공된 SFLG는 유지하면서 SFLG의 신규 제공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였고, 그 대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대출을 지급보증 하기위해 2010년 3월말까지 Enterprise Finance Guarantee(이하 EFG)를 집행할 예정이다(<http://www.berr.gov.uk/whatwedo/enterprise/enterprisesmes/info-business-owners/access-to-finance/sflg/page37607.html>). EFG는 연간 매출액이 2500만 파운드 이하인 중소기업에게 1000~100만 파운드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므로 SFLG보다 수혜 대상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 3)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의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 지 2년이 경과해야만 CDFI에 의한 자금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

- 만, 5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상환 비율이 제한을 받는다. 자금대여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상환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고, 4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50%를 그리고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75%를 초과할 수 없다(<http://www.hmrc.gov.uk/manuals/citmanual/CITM9900.htm>).
- 4)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2007년 6월에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동년 7월에 Small Business Service도 Enterprise Directorate로 개편되었다.
 - 5) 2008년 4월 ECF에 관한 업무가 Capital for Enterprise Limited(이하 CfEL라 칭함)로 위임됨에 따라, CfEL이 기존 ECF의 관리와 신규 ECF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http://www.berr.gov.uk/files/file44499.pdf>).
 - 6) RVCF, EGF, ECF 등에 중앙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당 투자조합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는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처럼 투자수익 극대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앙정부가 특정 기업에만 우대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 및 경쟁을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7) 이와 관련해서는 RVCF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한 Mason & Harrison (2003)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lmeida Capital. 2005. *A Mapping Study of Venture Capital Provision to SMEs in England, Small Business Service*.

Capital for Enterprise Ltd. 2008. *Enterprise Capital Funds: Guidance for applicants: Third Round*.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6. *2nd Round Enterprise Capital Funds: Guidance for applicants*.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7. *Small Firms Loan Guarantee Annual Report 2006-07*.

Harrison, Richard T. & Colin M. Mason. 2000. Editorial: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venture capital industry. *Venture Capital* 2(4), pp.243-253.

Heger, Diana, Andreas Fier & Gordon Murray. 2005. Review Essay: Regional Venture Capital Policy: UK and Germany Compared, *Venture Capital* 7(4), pp.373-383.

Mason, Colin M. & Richard T. Harrison. 2003. Closing the Regional Equity Gap? A Critique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s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Initiative. *Regional Studies* 37(8), pp.855-868.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2003.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Material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the First Minister of the Scottish Executive, & the First Minister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2006.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An Annual Report*.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the First Minister of Scotland, & the First Minister of Wales. 2007.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An Annual Report*.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the First Minister of Scotland, & the First Minister of Wales. 2008.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An Annual Report*.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ec.europa.eu/community_law/state_aids/comp-1999/n705-99.pdf

<http://www.hmrc.gov.uk/manuals/citmanual/CITM9900.htm>

<http://www.thecapitalfund.co.uk/>

<http://www.berr.gov.uk/files/file47204.pdf>

<http://www.berr.gov.uk/files/file44499.pdf>

<http://www.berr.gov.uk/files/file43003.doc>

<http://www.berr.gov.uk/whatwedo/enterprise/enterprise-smes/info-business-owners/access-to-finance/sflg/page37607.html>

<http://www.berr.gov.uk/bbf/small-business/info-business>

-owners/access-to-finance/page37736.html

<http://www.berr.gov.uk/whatwedo/enterprise/enterprise-smes/info-business-owners/access-to-finance/early-growth-funds/page37491.html>

교신: 변필성,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메일: drbyun@
krihs.re.kr

Correspondence: Pillsung Byun,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Regional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24
Simin-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
712, Korea, E-mail: drbyun@krihs.re.kr

최초투고일 2009년 1월 28일

최종접수일 2009년 3월 27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2, No.1, 2009(111~121)

The Financial Aids of the UK National Government for Promoting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Growth and Investment

Pillsung Byun*

Abstract : This paper explores the financial aids for promoting businesses' growth and investment which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as a policy instru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Especially, this work focuses on Small Firms Loan Guarantee,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corporate bodies, and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funds, all of which belong to the policy measures which pursu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in UK. Concerning the promotion of SMEs' growth, I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such measures for the Korean context.

Keywords :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loan guarantee, tax relief, venture capital fund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